

# 자퇴신청서

학부(과)	언어교육원	수강과정	한국어교육과정	국적	
성명		연락처			
자퇴사유					

위 본인은 상기사유로 인하여 자원퇴학 하고자 자퇴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1. 자퇴신청일로 부터 14일 이내 귀국하여야 합니다. 비자기간이 14일 이상 남아 있더라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. 기간 내 귀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 본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2. 자퇴신청서와 동시에 환불신청서(환불금액이 있을 시)를 제출하여야 하며, 환불은 7일~10일 소요됩니다.

202 년 월 일

신청인성명 : (인)

보호자성명 : (인)

성결대학교 언어교육원장 귀하